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 2017.6.3.] [대통령령 제28058호, 2017.5.29., 일부개정]



【제정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한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입국 또는 출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4288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입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출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정 · 개정문】

◎ 대통령령 제28058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라목 중 “카목1)”을 “파목1)”로 한다.

별표 3 제2호 마목부터 도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모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사목(종전의 마목) 및 아목(종전의 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60조제1항제3호의2”를 각각 “제60조제1항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종전의 사목)의 근거법조문란 중 “제60조제1항제3호의3”을 “제60조제1항제3호의4”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개정 2017. 5. 2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기준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기준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과권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종류·사육규모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나 목 또는 같은 호 파목1)의 과태료에 대한 세부 부과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부과금액 | | |
|---|-----------------|----------|-------|----------|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가. 법 제3조의4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 법 제60조 제1항제1호 | 100 | 200 | 500 |
| 나.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0조 제1항제1호의2 | 100 | 200 | 500 |
| 다.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 법 제60조 제1항제2호 | 100 | 200 | 500 |
| 라.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60조 제1항제3호 | 100 | 200 | 500 |
| 마.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입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2 | 30 | 200 | 500 |
| 바.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출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60조 제2항제1호 | 경고 | 10 | 50 |
| 사.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3 | 200 | 400 | 1,000 |
| 아.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실시 및 점검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3 | 100 | 200 | 500 |
| 자. 법 제7조제4항(법 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검사, 예찰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4 | 100 | 200 | 500 |
| 차.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60조 제1항제4호 | 200 | 400 | 1,000 |
| 카.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 또는 식용란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한 경우 | 법 제60조 제1항제4호의2 | 50 | 200 | 300 |
| 타.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60조 제1항제4호 | 50 | 200 | 300 |

| | | | | |
|---|------------------|-----|-----|-----|
| 파.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 법 제60조 제1항제5호 | | | |
| | | 100 | 400 | 800 |
| | | 100 | 400 | 800 |
| | | 200 | 600 | 800 |
| | | 200 | 600 | 800 |
| | | 100 | 400 | 800 |
| | | 100 | 400 | 800 |
| | | 100 | 400 | 800 |
| 하.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0조 제2항제3호 | | | |
| | | 50 | 150 | 300 |
| | | 50 | 100 | 200 |
| | | 100 | 150 | 200 |
| | | 100 | 150 | 200 |
| | | 50 | 100 | 200 |
| | | 50 | 100 | 200 |
| | | 50 | 150 | 300 |
| 거. 법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법 제60조 제2항제4호 | | | |
| | | 50 | 150 | 300 |
| 1)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유자등 | | | | |
| | | 50 | 100 | 200 |

| | | | | |
|--|--------------------|-----|-----|-----|
|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 | 100 | 150 | 200 |
| 4)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 | 100 | 150 | 200 |
| 5)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 및 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부화장의 운영자 | | 50 | 100 | 300 |
| 6)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 | 50 | 100 | 200 |
| 7)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의 운반자 | | 50 | 100 | 200 |
| 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 50 | 100 | 200 |
| 너. 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입기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출입기록을 한 경우 | 법 제60조 제2항제4호의2 | 100 | 200 | 300 |
| 더. 법 제17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보존기한까지 출입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0조 제2항제4호의3 | 100 | 200 | 300 |
| 러.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의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 법 제60조 제2항제4호의4 | 100 | 200 | 300 |
| 머. 법 제1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2 | 100 | 200 | 500 |
| 버. 법 제17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3 | 100 | 200 | 500 |
| 서. 법 제17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60조 제2항제4호의5 | 100 | 200 | 300 |
| 어. 법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4 | 100 | 200 | 500 |
| 저.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60조 제2항제5호 | 100 | 200 | 300 |
| 처. 법 제26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60조 제2항제5호 | 50 | 100 | 150 |

| | | | | |
|--|----------------|-----|-----|-----|
| 커. 법 제3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역관의 출입·검사 또는 물건 등의 무상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60조 제2항제6호 | 100 | 200 | 300 |
| 터. 법 제3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0조 제1항제6호 | | | |
| 1)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 거래가 금지되는 동물인 경우 | | 300 | 400 | 500 |
| 2)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1)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 거래가 금지되는 동물 외의 동물인 경우 | | 70 | 100 | 200 |
| 3)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법 제34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 | | 10 | 50 | 100 |
| 4)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법 제34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 | | 5 | 10 | 50 |
| 퍼.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검역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60조 제2항제7호 | 100 | 200 | 300 |
| 허.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물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0조 제2항제8호 | 100 | 200 | 300 |
| 고.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않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한 경우 | 법 제60조 제2항제9호 | 100 | 200 | 300 |
| 노.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60조 제1항제4호 | 100 | 200 | 300 |
| 도.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음식물 처리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60조 제2항제10호 | 50 | 100 | 200 |
| 로.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60조 제2항제11호 | 30 | 50 | 100 |
| 모.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자가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60조 제2항제12호 | 50 | 100 | 200 |